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

발의연월일: 2020. 6. 5.

발 의 자:윤관석·맹성규·유동수

송영길 · 신동근 · 이성만

김교흥 · 홍영표 · 박찬대

허종식 · 정일영 · 윤후덕

임오경・양향자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인천 지역에서도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 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 노동자 등이 시 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음. '인천5·3민주항쟁'은 198 0년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시위로, 1년 뒤에 발생한 1987년 6월 항 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인천5·3민주항쟁'은 정의규정에 누락되어 있어 역사적 평가

가 절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 법률 제 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부·마항쟁"을 "부·마항쟁, 인천5·3민주항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	제2조(정의)
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	
9혁명, <u>부·마항쟁</u> , 6·10항쟁 등	<u>부·마항쟁, 인천5·3민주</u>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	항쟁
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	
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	
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활동을 말한다.	